공고 제 10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26일

파장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서 *화	서 *화 1970-08-23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(파장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1-26